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28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김재원 · 강경숙 · 황운하
신장식 · 이해민 · 서왕진
차규근 · 장종태 · 강준현
황명선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
2.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활동 조건·범위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생 략) <u><신 설></u></p> <p>② · ③ (생 략)</p>	<p>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u></p> <p>1. <u>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 액에 관한 사항</u></p> <p>2. <u>경기 출전 및 훈련 등 활동 조건 · 범위에 관한 사항</u></p> <p>3. <u>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에 관한 사항</u></p> <p>4. <u>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u></p> <p>5. <u>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u></p> <p>6. <u>계약의 갱신 · 변경 ·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u></p> <p>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p>